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의결된 (재)화성시여성가족 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.

2025년 9월 12일

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이사장

(재)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정 제134호

### 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 개정

재단법인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인사 및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(휴일)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(휴일) ④ 화~토 근무부서의 경우, 주휴일(일요일)이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따른 공휴일이고 이로 인한 대체공휴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무급휴일(월요일)과 겹치면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부터 4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 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, 휴무대상자 및 사용 일시 등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방침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202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.